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8 선고 2021가단27301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19 선고 2022나51275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8 선고 2021가단273015 판결

전문

원 고 사단법인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

변 론 종 결 2021. 12. 17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8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41,485,47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

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, '피고가 2012. 2. 6.부터 2018. 2. 6.까지 107회에 걸쳐 원고의 돈 41,485,470원을 불법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므로, 부당이득 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'고 주장하나,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성용